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2011. 2. 14. 제정(제2011- 2차 이사회)

2011. 9. 20. 개정(제2011-12차 이사회)

2012. 9. 24. 개정(제2012-11차 이사회)

2017. 4. 14. 개정(제2017- 5차 이사회)

* 목차 1번과 2번에 한함

전 국 은 행 연 합 회

[목 차]

1.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소비자보호부)
2. 상품공시실 구성지침(소비자보호부) ····································
[별표] 상품공시 항목
[붙임] 은행상품공시 이용매뉴얼!
3. 예금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디지털혁신부) ······· '
4.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여신금융부) ······· 14
5. 신탁금리·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저축신탁·개인중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비교
공시자료 작성지침(자금시장부) 20
6. 외환수수료 및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 비교공시 작성지침
(자금시장부)4
7. 은행상품별 대출금리 공시지침(여신금융부) ·············· 49
<u> </u>

1. 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

-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상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은행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상품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 2. "은행이용자"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3. "관련 법규"라 함은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말한다.
 - 4. "공동위원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여신 전문위원회, 수신전문위원회, 신탁전문위원회 및 외국환전문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제4조(일반원칙) 은행은 상품의 내용이 완전하고도 충분히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공시자료는 은행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3. 공시자료는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한다.
- 4. 공시자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공시방법)** ①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을 마련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상품공시 이용매뉴얼
 - 2. 예금상품
 - 3. 대출상품
 - 4. 복합금융상품
 - 5. 서비스이용 수수료
 - ② 제1항의 상품공시실 공시항목별 공시내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상품공시실 구성은 「상품공시실 구성지침」에 따른다.
 - ③ 은행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공시한다.
 - 1. 금리(예금,대출,신탁,퇴직연금)
 - 2. 수수료(예금,대출,외환)
 - ④ 제3항의 비교공시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은 관련 전문위 원회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⑥ 은행은 제5항에 따라 상품별 대출금리를 추가로 공시할 경우, 「은행상품별 대출금리 공시지침」에 따른다.

제6조(공시기준변경) 이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변경한다. 다만 관련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등 부차적인 사항 및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 정비 등 단순개정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 개정여부는 해당 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7조(실무작업반) 연합회는 이 모범규준의 변경 및 기타 제반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품공시실 구성지침

- 1.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은행소비자 등이 접근 하기 용이한 위치에 「상품공시실」을 설정하고 [별표]의 항목을 공시한다.
- 2. 공시항목 배열은 [별표]상의 배열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 3. 상품공시실 첫 화면에 [붙임]의 '은행상품공시 이용매뉴얼'을 수록한다.
- 4. 공시항목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별표]

상품공시 항목

	상품공시실								
은행상품공시 이용매뉴얼									
예금상품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주택청약관련예금								
	예금금리								
대출상품									
	담보대출 · 주택담보부								
	·기타담보부								
	신용대출								
복합금융상품									
서비스이용 수	수료								

[붙임]

은행상품공시 이용매뉴얼

■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상품정보, 상품설명서, 약관 등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은행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링크(추후)

■ 다른 은행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 · 전국은행연합회 금리비교 및 수수료비교 🖙 전국은행연합회 링크
- ·다른 권역의 비교공시 사이트 🖙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시스템 링크(추후)

■ 금융계산기를 이용하여 만기예상금액 등을 설계해 보세요!

예금액, 이자방식, 기간, 금리 등을 선택하여 월납부액 또는 만기예상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시스템 링크(추후)

■ 등록된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세요!

무등록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전국은행연합회 대출상담사 조회 링크

■ 은행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은행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권유받을 때:계약의 주요내용 설명
- •소비자가 청약한 경우:약관 제공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서류 교부

■ 예금자보호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금보험공사 링크

■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 민원센터 🕿 🐷 은행 민원센터 링크
-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센터 ☎ 3705-5000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 상담실 링크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 1332 ☞ e-금융민원센터 링크 (www.fcsc.kr)

3. 예금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은행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간 비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담당자의 지정) ①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지침의 준수) 공시기관은 동 지침을 준수하여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자료의 작성) ①공시기관은 당해 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금리 및 예금 수수료를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공시기관은 제1항의 공시를 위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③연합회는 제2항의 홈페이지를 각 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제5조(공시절차) ①공시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에따라 비교공시 자료를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할 경우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일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④공시기관은 필요시 공시되고 있는 대표상품을 삭제하고 다른 대표상품으로 대체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⑤공시기관은 공시되고 있는 상품이 판매가 중단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다른 대표상품으로 대체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⑥연합회는 공시된 자료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검증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예금 금리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6조(공시범위 및 기준) ①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품별 대표 상품을 각 7개 이내로 정하여 공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개별 공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 1. 정기예금
- 2. 적금
- 3. 입출금자유예금
- 4. 상호부금
- 5. 개인MMDA
- 6. 법인MMDA
- ②공시기관간 비교 가능성이 낮은 특판상품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 ③연합회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보 효용성, 상품의 비교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시기관의 특정상품을 별도로 공시할 수 있다.

④상품별 기본금리는 영업점장전결금리, 인터넷가입금리, 연결상품 우대금리 등 모든 추가금리를 배제한 공시금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7조(세부작성요령)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정기예금 및 적금은 [별첨 1] 서식에 작성하여 연합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하고, 입출금자유계금은 [별첨 2] 서식에 작성하여 연합회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한다.

이외 상품은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기관 담당자가 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한다.

제3장 예금 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8조(공시범위 및 기준) ①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시한다.

- 1. 송금수수료(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 2.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당행, 타행)
- 3. 기타수수료(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어음·수표용지 교부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잔액 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도처리 수수료, 보관어음 수수료, 결제연장 수수료, 타점권 자금화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명의변경 수수료, 질권설정 수수료, 당좌신용조사 수수료)
- ②결합상품, 이용실적 등급에 따른 혜택 등 모든 추가 혜택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를 배제한 기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③수수료의 발생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기준금액별로 수수료를 등록한다.
- ④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항목은 면제임을 표시한다.

제9조(세부작성요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기관 담당자가 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동 지침 내 항목의 수정 및 추가는 수신전문위 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3. 3. 5.)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5.)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8.)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5.)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2.)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0.)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10.)

이 지침은 수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금금리 공시자료 작성 방법

以五〇岩		유형별 공시정보
상품유형	정보명	분류 기준
	저축기간별 금리	저축기간 1, 3, 6, 12, 24, 36개월 등 금리
	세전·세후금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15.4%) 적용 전·후 금리
	최고금리(우대금리포함)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금리
정기예금	전월취급평균금리	직전월 신규 취급한 가중평균금리
(별첨 1)	중도해지금리	가입후 6개월 경과후 중도해지금리
	만기시예상금액	만기까지 납입시 예상금액
	이자 계산방식	단리, 복리
	상세정보	만기 후 금리,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적립유형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저축기간별 금리	저축기간 1, 3, 6, 12, 24, 36개월 등 금리
적금	세전·세후금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15.4%) 적용 전·후 금리
	최고금리(우대금리포함)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금리
(별첨 1)	전월취급평균금리	직전월 신규 취급한 가중평균금리
(2-6-1)	중도해지금리	가입후 6개월 경과후 중도해지금리
	만기시예상금액	만기까지 납입시 예상금액
	이자 계산방식	단리, 복리
	상세정보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입출금	세전·세후금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15.4%) 적용 전·후 금리
자유예금	최고금리(우대금리포함)	우대조건 충족시 최고금리
(별첨 2)	이자지급방식	수시지급, 월지급, 분기지급, 반기지급, 연지급
,	상세정보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상호부금	저축기간별 금리	저축기간 6, 12, 24, 36개월 등 금리
(별첨 3)	상세정보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개인MMDA	저축기간별 금리	금액구간별(5백만, 1천만, 3천만, 5천만, 1억) 금리
(별첨 3)	상세정보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법인MMDA	저축기간별 금리	금액구간별(5천만, 1억, 5억, 10억) 금리
(별첨 3)	상세정보	가입방법, 우대조건 등

[별첨 1] 서식 및 작성방법(정기예금 및 적금)

* 공시기관 담당자가 동 서식에 작성하여 연합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

[별첨 2] 서식 및 작성방법(입출금자유예금)

* 공시기관 담당자가 동 서식에 작성하여 연합회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출

[별첨 3] 기타 상품 작성방법(상호부금, 개인MMDA, 법인MMDA)

정보명	작성 내용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2. 상품명	해당 상품명 입력(해당 상품페이지 링크 주소 포함)
3. 기타 특이사항	상품관련 특·장점 등 입력
4. 기준일	금리변경일을 입력
5. 금리	제시된 기간별 금리 입력 (공시금리 기준)

^{*} 공시기관 담당자가 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

[별표 2] 예금 수수료 공시자료 작성 방법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3. 당・타행 선택 수수료의 기준금액 입력 수수료의 기준금액 입력 수수료의 기준금액에 따른 창구이용 수수료 입력 수수료의 기준금액에 따른 창구이용 수수료 입력 수수료 인류 자동화기기(마감전) 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주) 연 7. 자동화기기(마감전) 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주) 연 8. 인터넷 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 9. 텔레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밀레뱅킹 수수료 입력 10. 모바일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밀레뱅킹 수수료 입력 10. 모바일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수수료 법령일 3. 당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법령일 수수료 입력 수수료 법령일	
2. 기준일	
3. 당·타행 선택	
송금4. 기준금액수수료의 기준금액 입력송금5. 창구이용 수수료기준금액에 따른 창구이용 수수료 입력수수료6. 자동화기기(마감전)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전) 연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전) 연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7. 자동화기기(마감후)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9. 텔레뱅킹기준금액에 따른 텔레뱅킹 수수료 입력10. 모바일뱅킹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1. 은행명해당 은행명 입력자동화2. 기준일수수료 변경일기기3. 당행 마감전 인출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수수료4. 당행 마감후 인출같은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수수료5. 타행 마감전 인출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6. 타행 마감후 인출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1. 은행명해당 은행명 입력	
송금5. 창구이용 수수료기준금액에 따른 창구이용 수수료 입력수수료6. 자동화기기(마감전)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전)7. 자동화기기(마감후)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후)8. 인터넷 뱅킹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9. 텔레뱅킹기준금액에 따른 텔레뱅킹 수수료 입력10. 모바일뱅킹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자동화1. 은행명해당 은행명 입력가동화2. 기준일수수료 변경일기기3. 당행 마감전 인출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수수료4. 당행 마감후 인출같은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수수료5. 타행 마감적 인출다른 은행 마감적 인출 수수료 입력6. 타행 마감후 인출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1. 은행명해당 은행명 입력	
수수료6. 자동화기기(마감전)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전)7. 자동화기기(마감후)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후)8. 인터넷 뱅킹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9. 텔레뱅킹기준금액에 따른 텔레뱅킹 수수료 입력10. 모바일뱅킹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1. 은행명해당 은행명 입력자동화 기기 인출2. 기준일수수료 변경일3. 당행 마감전 인출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4. 당행 마감후 인출같은 은행 마감주 인출 수수료 입력5. 타행 마감전 인출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6. 타행 마감후 인출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1. 은행명해당 은행명 입력	
7. 자동화기기(마감후) 기준금액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마감후) 연 8. 인터넷 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 9. 텔레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텔레뱅킹 수수료 입력 10. 모바일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4. 당행 마감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주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변경일 1. 은행명 대감적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주 인출 다른 은행 마감주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8. 인터넷 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인터넷 뱅킹 수수료 입력 9. 텔레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텔레뱅킹 수수료 입력 10. 모바일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대당 은행명 입력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입력 수수료 1. 당행 마감전 인출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대당후 인출 수수료 입력 해당 은행명 입력]력
9. 텔레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텔레뱅킹 수수료 입력 10. 모바일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가동화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4. 당행 마감주 인출 같은 은행 마감주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5. 타행 마감전 인출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력
10. 모바일뱅킹 기준금액에 따른 모바일 뱅킹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대당 은행명 입력 수수료 변경일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4. 당행 마감주 인출 같은 은행 마감주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입력 수수료 입력 수수료 입력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대당 은행명 입력 대당 인령 임력 대당 인령 임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자동화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4. 당행 마감후 인출 같은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5. 타행 마감전 인출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자동화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4. 당행 마감후 인출 같은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5. 타행 마감전 인출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기기 3. 당행 마감전 인출 같은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인출 4. 당행 마감후 인출 같은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인출 4. 당행 마감후 인출 같은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수수료 5. 타행 마감전 인출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수수료 5. 타행 마감전 인출 다른 은행 마감전 인출 수수료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6. 타행 마감후 인출 다른 은행 마감후 인출 수수료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2.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3.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정액권 및 일반권별 장당 발행 수수료 입력	
4. 어음·수표용지 교부 수수료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기계수표별 권별 교부 수수료 약]력
5.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통장·증서 장당 재발급 수수료 입력	
6.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장당 또는 건당 발급 수수료 입력	
7.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액증명서 장당 또는 건당 발급 수수료 입력	
기타 수수료 자기앞수표 및 기타 수표 장당 부도처리 수수료 약	력
9. 보관어음 수수료 보관어음 보관시 및 반환시 장당 수수료 입력	
10. 결제연장 수수료 장당 결제연장 수수료 입력	
11. 타점권 자금화 수수료 타점권 장당 또는 건당 자금화 수수료 입력	
12. 제사고 신고 수수료 제사고 신고시 건당 수수료 입력	
13. 명의변경 수수료 명의변경 신고시 건당 수수료 입력	
14. 질권설정 수수료 질권설정시 건당 수수료 입력	
15. 당좌신용조사 수수료 당좌 신용조사시 건당 수수료 입력	

^{*} 공시기관 담당자가 연합회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

4.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 작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간 비교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기관의 범위) 본 지침에 따라 비교공시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은 연합회의 정사원 중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공시담당자의 지정) ① 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절차) ① 공시기관은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자료를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기관은 공시자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공시자료를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③ 공시기관은 공시자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새로운 공시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공시기관은 본 지침에 따른 공시를 위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⑤ 연합회는 제4항의 홈페이지를 각 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제5조(대출금리 공시자료 작성방법) 공시기관별 가계 대출금리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자료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

서식 120호 '은행 경영공시 등 서식' 중 'Ⅱ. 대출가산금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6조(공시자료 작성범위)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자료의 작성 범위는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정한다.

- 1. 여신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2.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3.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4.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제7조(세부작성요령) 세부작성요령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대출 연체이자율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8조(공시자료 작성범위)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공시자료의 작성범위는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 연체이자율 및 연체유형 (이자 연체, 분할상환금 연체, 원금 연체)별 지연배상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부작성요령) 세부작성요령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부 칙(2011. 2. 14.)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동 지침 내 항목의 수정 및 추가는 여신전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1. 9. 20.)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2.)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19.)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9.)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26.)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10.)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7.)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항의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공시자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14.)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12.)

동 지침은 여신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25년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출수수료 공시자료 작성방법

작성 구분	작성 내용
1. 은행명	해당 은행명을 등록
2.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출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최저 및 최고금액을 입력 (링크)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대출관련 제증명서발급 수수료 안내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 등록(은행 홈페이지, 대출상품 메인페이지 등이 연결 되지 않도록 주의)
3. 중도상환수수료	아래의 구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입력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담보대출은 '부동산 및 동산', '보증서 및 기타'로 구분)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링크)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 등록(은행 홈 페이지, 대출상품 메인페이지 등이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
4. 기업 한도대출수수료	기업 한도대출 관련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요율을 입력 (링크)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기업 한도대출수수료 안내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 등록(은행 홈페이지, 대출상품 메인페이지 등이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

[별표 2] 대출 연체이자율 공시자료 작성방법

작성 구분	작성 내용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등록
2.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변경의 기준이 되는 연체기간을 입력
3.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대출금리 + 연체 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형태로 입력
4. 최고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 입력
5. 기타	별도의 연체이자율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등 금융 소비자가 해당 은행의 연체이자율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
6. 연체유형별 지연배상금액 예시	연체유형(이자 연체, 분할상환금 연체, 원금 연체)별로 연체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의 지연배상금액 등을 입력

5. 신탁금리·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퇴직연금용 정기 예금·연금저축신탁·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비교공시 자료 작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 공되는 "신탁금리·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연금 저축신탁·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의 작성에 있어 통일된 작성기준을 각 행(이하 "공시기관")에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간 비교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6.06.08. 개정)

제2조(공시 담당자의 지정) ①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작성지침의 준수) 공시기관은 동 지침을 준수하여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자료의 작성) ① 공시기관은 당해 기관이 취급하는 신탁상품의 금리, 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금리,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수수료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금리를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016.06.08. 개정)

- ②공시기관은 제1항의 공시를 위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작성한다.
- ③연합회는 제2항의 홈페이지를 각 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제5조(공시자료의 등록·갱신·삭제) ①공시기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구분

- 에 따라 매월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자행의 대표펀드를 등록하여 금리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되고 있는 대표펀드를 삭제하고 다른 대표펀드로 대체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공시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매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을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공시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금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3영업일전까지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016.06.08. 개정)
 - 1. 등록된 상품에 대한 자행의 금리가 변동될 경우 연합회에 등재된 비교공시 자료를 지체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2016.06.08. 개정)
 - 2. 금리변동 등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월 1일 기준으로 3영업일전까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화 면에서 '은행확인일'을 갱신한다. (2016.06.08. 개정)
- ④공시기관은 [별표 4]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매분기 말로부터 익월 말까지 자행 연금저축신탁상품의 수익률, 수수료율을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공시기관은 [별표 5]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 예·적금 금리를 매월 1일 기준으로 3영업일전까지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016.06.08. 신설)
 - 1. 등록된 상품에 대한 자행의 금리가 변동될 경우 연합회에 등재된 비교공시 자료를 지체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 2. 금리변동 등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월 1일 기준으로 3영업일전까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 화 면에서 '은행확인일'을 갱신한다.
- 제6조(비교공시 자료의 검증) ①연합회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검증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6.06.08. 개정)
- ②연합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시에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자료 미등록시 은행에 자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된 자료의 이상여부를 과거자료 비교 등을 통해 검증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연합회는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시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자료 미등록시 은행에 자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된 자료를 해당 은

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검증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신탁금리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7조(범위) 신탁금리 비교공시자료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호의 상품에 해당하는 공시기관별 대표 펀드로 정한다.

- 1. 개인연금신탁
- 2.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안정형
- 3.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안정형
- 4. 퇴직신탁 채권형 안정형

제8조(금리기준) 각 상품별 금리는 실제 배당률을 기재한다.

제9조(상품기준) 현재 판매중이거나 펀드가 유지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기재한다.

제10조(세부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1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3장 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11조(범위) 퇴직연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비교공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퇴직연금 종류별로 작성한다.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업형 IRP 포함)
- 3. 개인형 IRP

제12조(운용금액 및 수익률 및 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 ①각 퇴직연금 종류별 운용금액은 매분기말 및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 금 비보장상품, 합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2017.07.13. 개정)

② 1항에 따른 계에는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과 그 외의 가입자의 운용금액을

부기한다. 다만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그 외의 가입자의 운용금액'으로 본다.

- ③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은 매분기말 및 매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022.09.29. 개정)
 - 1. 직전 1년간 수익률
 - 2. 3년·5년·7년·10년 평균 수익률
- ④ 퇴직연금 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은 제11조에서 정한 퇴직연금 종류 별로 작성한다. (2025.04.04. 개정)

제13조(상품기준) 현재 유지되고 있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대상으로 기재한다.

제14조(세부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2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4장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금리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15조(범위)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금리 비교공시자료는 다음 각호의 퇴직연금 종류별 범위내에서 작성한다.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3. 개인퇴직계좌

제16조(금리기준) 각 상품별 금리는 만기일시지급식 금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016.06.08. 개정)

제17조(상품기준) 현재 판매중인 상품만 기재한다.

제18조(세부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3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5장 연금저축신탁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19조(범위) 연금저축신탁 비교공시자료의 작성 범위는 과거에 판

매되었거나 현재 판매중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신탁상품(개인연금신탁 및 신개인연금신탁 제외)으로 정한다.

제20조(세부작성요령) 세부작성요령은 별표 4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6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금리 비교공시자료 작성 (2016.06.08. 신설)

제21조(범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금리 비교공시자료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작성한다. (2016.06.08. 신설)

제22조(금리기준) 각 상품별 금리는 만기일시지급식 금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2016.06.08. 신설)

제23조(상품기준) 현재 판매중인 상품만 기재한다. (2016.06.08. 신설)

제24조(세부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5]에서 정함에 따른다. (2016.06.0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동 지침 내 항목의 수정 및 추가는 신탁전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12. 9. 24.)

제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① 이 지침은 이사회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른 공시자료는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2012년 10월 말부터 공시한다. 다만, 직전 3년 연간수익률은 시행일 이전의 공시자료도 2012년 10월말부터 공시한다.

부 칙 (2012. 11.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9월말 기준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동 기 준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중 "기간별 유지율"의 개정지침은 2013년 12월말 기준 자료 의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8.)

제1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은 2016년 1분기 공시자료부터 적용하며,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 중 10년 평균 수익률은 2018 년 4분기 공시자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적금 금리의 비교공시는 상품출시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2조제3항제3호의 10년 평균수익률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최근 9년간 평균수익률을 공시하고, 2019년 1월부터 10년간 평균수익률을 공시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총비용부담률은 2018년 1월부터 공시한다.

부 칙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2조제3항제3호의 10년 평균수익률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최근 9년간 평균수익률을 공시하고, 2019년 1월부터 10년간 평균수

익률을 공시한다.

부 칙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3분기 공시자료부터 적 용한다.

부 칙 (2022. 11.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중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의 개정지침은 2023년 2분기말 기준 자료의 공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4.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1.공시자료 작성방법 중 '(1)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 운용금액*, 적립금 운용수익률' 항목은 2025년 1분기말 기준 자료의 공시부터시행하며 '(4-2) 원리금비보장상품' 항목은 2025년 6월에 실시하는 비교공시부터시행한다.

부 칙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신탁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탁금리 공시자료 작성 방법

□ 파일내용 : A~Z, AA~AH열(1개의 도표로 작성, CSV파일로 저장)

A	В	С	D	Е	F	G	Н	I	J	K	L	M	N	О	Р	Q
							신탁금액	기준가			자식	산운용내역	(월말, 변	백만원)		
기준년월	은행코드	은행명	상품명	상품명2	펀드유형	설정일	(월말,백만원)	(월말,원	계	대출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통안증권	회사채	기타채권	주식	CP 및 어음

R	S	Т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자산운용내역 기타 유동성자산	절규배당류	2001년 평균배당률	2002년 평균배당률	2003년 평균배당률	2004년 평균배당률	2005년 평균배당률	2006년 평균배당률	2007년 평균배당률	2008년 평균배당률							설정일 이후 평균배당률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A(기준년월) : 년도와 월을 6자리 숫자로 표시(YYYYMM / 예 : 201010)
- 2) B(은행코드) : 지정된 은행 코드 숫자로 입력
 - 우리은행 20, SC은행 23, 국민은행 04, 외환은행 05, 신한은행 26, 한국씨티은행 27, 하나은행 81
 - 산업은행 02, 농협은행 10, 기업은행 03, 수협중앙회 07
 - 대구은행 31, 부산은행 32, 광주은행 34, 제주은행 35, 전북은행 37, 경남은행 39
- 3) C(은행명) : 은행명 입력 (예 : 우리은행)
- 4) D(상품명) : 상품명 입력 (예 :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퇴직신탁)
- 5) E(상품명2) : 펀드이름 등 입력, 200byte (예 : 1호, 2호)
 - ※ 합병은행은 통합 전 은행명 표기를 '상품명2'에서 구분할 것 (예:구국민,구주택,구서울)
- 6) F(펀드유형): '채권형', '안정형', '없음' 중에서 1개 표시

※ 주식성장형 등 기준 외의 표기는 E(상품명2)에서 표시함

- 7) G(설정일) : 연월일시를 8자리 숫자로 표시 (YYYYMMDD / 예 : 20061231)
- 8) H(신탁금액) : 정수형 숫자 (7자리)
- 9) I(기준가격) : 소수점 이하 숫자 (2자리)
- 10) J(계)~R(기타 유동성 자산) : 정수형 숫자
- 11) S~AB(과거 10년간 평균배당률): 2000년 ~2009년의 평균배당률, 소수점 이하 숫자(2자리)
- 12) AC(현재년도 평균배당률)~AH(설정일 이후 평균배당률) : 소수점 이하 숫자
- 13) 기타 : 대표적인 오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하거나 오류가 생김
 - 날짜 표시가 기준 자릿수에 맞지 않는 경우
 - 은행명 기입시 '은행'을 생략하고 기입하는 경우
 - 펀드유형을 '채권형', '안정형' 외 다른 것을 입력하는 경우
 - 상품명 기입시 '신탁'을 생략하는 경우
 - 합병 전 은행명을 E열이 아닌 다른 곳에 기입하는 경우
 - 전체 셀 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과거 10년간 평균배당률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을 기입해야 함)
 - 규정 셀 외의 곳에 메모나 주석을 다는 경우
 - 공란으로 남겨 놓은 셀이 있을 경우(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문자셀은 '없음', 숫자셀은 '0'으로 표시)
 - 열 제목(기준년월, 은행코드, 은행명)이 기재된 행은 생략하고 데이터가 있는 본문만 복사하여 업로드 함

[**별표 2**] 퇴직연금 운용금액, 수익률 및 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 공시 자료 작성방법

- 1. 공시자료 작성방법(2025.06.12. 개정)
- (1) 퇴직연금 제도별 적립금 운용금액*, 적립금 운용수익률

	작성 구분	-1 .1 .1 A			
대	소	작성 내용			
보3	1서 작성기준일	해당 기준연도 입력 (연도와 월을 6자리로 표시(YYYYMM) / 예 : 201909)			
	작성단위	금액은 "원"단위로 숫자, 비율은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퇴진	식연금 제도구분	1:원리금보장, 2:원리금비보장, 3:합계*, 4:자사계열사, 5:기타사업자			
	해당분기 적립금	해당분기 말 기준 적립금 입력			
	해당분기 수익률	직전 1년간 수익률 입력			
DB	장기수익률 3년	전년도 말 기준 3년 평균 수익률			
סט	장기수익률 5년	전년도 말 기준 5년 평균 수익률			
	장기수익률 7년	전년도 말 기준 7년 평균 수익률			
	장기수익률 10년	전년도 말 기준 10년 평균 수익률			
	해당분기 적립금	해당분기 말 기준 적립금 입력			
	해당분기 수익률	직전 1년간 수익률 입력			
DC	장기수익률 3년	전년도 말 기준 3년 평균 수익률			
DC	장기수익률 5년	전년도 말 기준 5년 평균 수익률			
	장기수익률 7년	전년도 말 기준 7년 평균 수익률			
	장기수익률 10년	전년도 말 기준 10년 평균 수익률			
	해당분기 적립금	해당분기 말 기준 적립금 입력			
	해당분기 수익률	직전 1년간 수익률 입력			
IDD	장기수익률 3년	전년도 말 기준 3년 평균 수익률			
IRP	장기수익률 5년	전년도 말 기준 5년 평균 수익률			
	장기수익률 7년	전년도 말 기준 7년 평균 수익률			
	장기수익률 10년	전년도 말 기준 10년 평균 수익률			

-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세부 구성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예: 예금과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예금 관련 현황은 원리금 보장 항목에 포함, 집합투자증권 관련 현황은 원리금 비보장 항목에 포함)
- ** 적립금만 공시

(2) 퇴직연금 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

	작성 구분		7]. 24 . 1] ()			
대	소	2	작성 내용			
	보고서 작성기준역	일	해당 기준연도 입력 (연도와 월을 6자리로 표시(YYYYMM) / 예 : 201909)			
	작성단위		% 기준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네번째 자라에서 반올림하여 세번째 자라까지 표시(예 : 100.000, 소수점 이하 세번째 자리가 '0'일 경우 세번째 자리값에 반드시 '0' 기재) -마이너스수익률은'-'표기(ex:-13.567)			
	금융회사	권역코드	1:은행, 2:증권, 3:자산운용, 4:생명보험, 5:손해보험			
퇴직연금 사업자 정보	금융회/	사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금융사 코드 정보			
	금융호	사명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의 코드 정보와 함께 등록된 금융회사 명칭			
		운용관리수수 료 비용 부담률(A)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 해연도에 발생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운용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 어 계산			
	(1)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	자산관리수수 료 비용 부담률(B)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DB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A+B)	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및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을 합산			
	(2) 펀드 가입채널별·위 험등급별 판매보수 부담률(퇴직연 금사업자 수취 분)	1등급 펀드	펀드의 가입방법(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및 투자 위험 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자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			
		면 채 널 3등급 펀드 펀드	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편드 약			

	1		T	
			4등급 펀드	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5등급 펀드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6등급 펀드	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1등급 펀드	펀드의 가입방법(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및 투
			2등급 펀드	자 위험 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 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
		비대	3등급 펀드	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면 채 널	4등급 펀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편드 약 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5등급 펀드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6등급 펀드	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감면	-관리수수 료 정책(원리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한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 (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3) 원리금 비보장상품	금 년	미보장상품 대상)	복수의 감면정책을 운영 중인 경우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재(ex: "1.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에 한함)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20% 할인, 2.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운용 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	자산관리수수 료 감면정책(원리 금 비보장상품 대상)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한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복수의 감면정책을 운영 중인 경우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재(ex:"1.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에 한함)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 20% 할인, 2.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운용 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Ι		
DC	(1)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	운용관리수수 료 비용 부담률(A)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자산관리수수 료 비용 부담률(B)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A+B)		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및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을 합산
	(2) 펀드	대면채널	1등급 펀드	펀드의 가입방법(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및 투자 위험 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약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2등급 펀드	
			3등급 펀드	
			4등급 펀드	
			5등급 펀드	
			6등급 펀드	
		비대면채널	1등급 펀드	펀드의 가입방법(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및 투자 위험 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약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2등급 펀드	
			3등급 펀드	
			4등급 펀드	
			5등급 펀드	
			6등급 펀드	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3) 원리금	운용	관리수수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

	ı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	료 감면정책(원리 금 비보장상품 대상)		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한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 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 (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복수의 감면정책을 운영 중인 경우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재(ex:"1.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에 한함)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 20% 할인, 2.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운용 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자산관리수수 료 감면정책(원리 금 비보장상품 대상)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한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복수의 감면정책을 운영 중인 경우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재(ex:"1.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에 한함)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 20% 할인, 2.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운용 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개인형 IRP	(1)수수료 항목별 비용 부담률	운용관리수수 료 비용 부담률(A)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 해연도에 발생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운용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 어 계산
		자산관리수수 료 비용 부담률(B)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 해연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자산관 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으로 나누 어 계산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A+B)		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및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을 합산
	(2) 펀드 가입채널별·위 험등급별 판매보수 부담률(퇴직연 금사업자 수취 분)	대면채널	1등급 펀드	펀드의 가입방법(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및 투 자 위험 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
			2등급 펀드	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3등급 펀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4등급 펀드	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편드 약 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5등급 펀드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6등급	

T	ı		
		펀드	
		1등급 펀드	펀드의 가입방법(대면채널, 비대면채널) 및 투자 위험 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비대면채널	2등급 펀드	
		3등급 펀드	
		4등급 펀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약
		5등급 펀드	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펀드 약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6등급 펀드	
(3)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	운용관리수수 료 감면정책(원리 금 비보장상품 대상)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한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 (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복수의 감면정책을 운영 중인 경우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재(ex:"1.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에 한함)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 20% 할인, 2.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운용 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자산관리수수 료 감면정책(원리 금 비보장상품 대상)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수수료에 대한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자산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복수의 감면정책을 운영 중인 경우 번호를 달리하여 구분 기재(ex:"1. 원리금 비보장상품(펀드에 한함) 운용 적립금에 대해 수수료 20% 할인, 2.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전체 적립금의 70% 운용 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

(3-1) 퇴직연금 수수료율 보고서

작성 구분	작성 내용
제도유형	1:DB, 2:DC, 3:기업형IRP, 4:개인형IRP, 5:표준형DC, 6:연금전환특약
수수료 구분	1:운용관리, 2:자산관리
수수료 구분2	1:사용자부담분, 2:가입자부담분
수수료 구분3	1:일반계약, 2:전자금융
수수료율	비율은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예: 0.351)
적립금 하한	적립금 하한 금액을 '원'단위로 기재
적립금 상한	적립금 상한 금액을 '원'단위로 기재
수수료 부과방식	1:단일식, 2:체차식
수수료 하한	수수료 하한 금액을 '원'단위로 기재
적립금 하한 구분	1:이상, 2:초과
적립금 상한 구분	1:이하, 2:미만
장기계약 할인여부	1:적용, 2:미적용

(3-2) 퇴직연금 수수료율 장기계약할인 보고서

작성 구분	작성 내용
제도유형	1:DB , 2:DC, 3:기업형IRP, 4:개인형IRP, 5:표준형DC, 6:연금전환특약
수수료 구분	1:운용관리, 2:자산관리
수수료 구분2	1:사업자부담분, 2:가입자부담분
수수료 구분3	고정값 : '1' 입력
경과년수	경과년수를 "숫자"로 입력 (예 : 2년이상의 경우 '2' 입력)
할인율	비율은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입력(예: 0.35)
기타	장기계약 할인 외에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관련 내용 텍스트 작성 (예 : 타사 계약기간 인정, 사회적 기업 50% 할인 등)

(4)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 및 원리금비보장상품 현황

(4)-1 원리금보장상품

작성 구분		סוו. נגודי
대	소	작성 내용
퇴직연금 제조사 정보	금융회사 권역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권역 코드 정보 1:은행, 2:증권, 3:자산운용, 4:생명보험, 5:손해보험
	금융회사 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금융사 코드 정보
	금융회사명	퇴직연금 제조사 금융회사명
퇴직연금	금융회사 권역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권역 코드 정보 1:은행, 2:증권, 3:자산운용, 4:생명보험, 5:손해보험
판매사 정보	금융회사 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금융회사 코드 정보
	금융회사명	퇴직연금 판매사 금융회사명
가입지	· 구분	1:DB, 2:DC, 3:IRP
제조사	상품코드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코드
판매사 상품코드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상품코드 제조사 와 동일한 코드를 사용시에는 동일값으로 작성
상품유형		1:은행 예적금, 2:저축은행 예적금, 3:우체국 예적금, 4:금리연동형 보험, 5:이율보증형 보험, 6:정부보증채, 7:원리금보장파생결합사채,8:환매조건부매수계약, 9: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10: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상품	품명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명
금리적	용기간	금리 적용되는 당월
금융사	확인일	금융회사가 협회에 비교공시 자료 제출한 날
금리연동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 금리일 경우 '-'표기 (예 : -13.56)
만기기간		상품별 만기 작성 시 기준은 "개월 수" (예 : 3년 만기상품은 '36'으로 입력)
만기별 약정금리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 금리일 경우 '-'표기 (예: -13.56)

(4)-2 원리금비보장상품

작성 구분		작성 내용
대	소	작경 내 용
	자산운용사 권역코드	1:은행, 2:증권, 3:자산운용, 4:생명보험, 5:손해보험, 6:저축은행 혹은 기타
퇴직연금 상품의 자산운용사 정보	자산운용사 금융회사 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금융사 코드 정보
	자산운용사명	퇴직연금 제조사 금융회사명
جا جا ما ح	금융회사 권역코드	1:은행, 2:증권, 3:자산운용, 4:생명보험, 5:손해보험
퇴직연금 사업자 정보	금융회사 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금융사 코드 정보
	금융회사명	퇴직연금 판매사 금융회사명
상품구분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중 Ⅱ.운용관리업무보고서의 '5. 집합투자증권 세부운용현황(운용관리계약 기준)'작성기준에 따라 펀드를 분류함
상급	품명	자산운용사의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펀드 상품명 및 퇴직연금 클래스 사용
금융회시) 확인일	금융회사가 협회에 비교공시 자료 제출한 날
연평균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의 말일을 포함하여 연평균 수익률 (10년, 7년, 5년, 3년, 1년) 산출
		% 기준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네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세번째 자리까지 표시 (ex: 100.000, 소수점 이하 세번째 자리가 '0'일 경우 세번째 자리값으로 반드시 '0' 기재)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7)
		상품 운용기간이 해당기간에 못 미치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둠
		1:1등급, 2:2등급, 3:3등급, 4:4등급, 5:5등급, 6:6등급
상품 위험등급		공시정보 작성기준일(매월 말일)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상품 약관에 명시된 위험등급 기재

펀드 총보수·비용	% 기준으로 표시하고, 표소수점 이하 네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0) 상품 약관에 명시된 펀드 총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이 상품 관련 금융회사가 수취하는 펀드 총보수·비용을 모두 포함
순자산 총액	공시 대상 상품정보의 정기 제출 기준년월의 직전 월말 기준으로 집계(ex: 2024년 6월에 제출하는 보 고서의 경우 2024년 5월말 기준 데이터를 활용)
상품 설정일	해당 상품이 최초 설정된 날짜로 상품 약관에 명시 된 설정일을 따름(ex:YYYYMMDD)

(5)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

작성 구분		ZLA-111 Q
대	소	· 작성 내용
특정사업자 제공한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으로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의 최대한도액 "원"단위로 입력
금리		1년 만기상품 기준 해당연도 누적 평균금리(산술평균)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상품지	테공 금액	"원"단위로 기재
	제공회사명	퇴직연금 판매사 금융회사명
사업자별 사포제고	제공회사코드	금융감독원 등록된 각 금융회사 코드 정보
상품제공 실적	제공금액	"원"단위로 기재
	잔여한도	연누적 잔여한도 "원"단위로 기재

2.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2025.4.4. 개정)

가. 공시항목: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 펀드 판매보수부담률(가입방법별 및 투자 위험등급별 퇴직연금사업자 수취 분),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운용관리, 자산관리) 감면정책

나. 공시방법

- (1) 공시항목은 퇴직연금 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로 구분하며,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은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에 포함
- (2)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당해연도에 적립금에서 차감한 금액 기준. 단, 별도납은 약관(또는 계약서)의 납입기한 및 실제 납입일 중 빠른 날이 포함된 연도에 반영
- (3)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
 - (가)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 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운용손익 연동 수수료를 포함
 - (나)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별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 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
 - (다) 수수료 비용부담률 합계: 가입방법별 운용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 및 자산관리수수료 비용 부담률을 합산
- (4) 펀드 판매보수 부담률 : 펀드의 가입방법(대면 채널, 비대면 채널) 및 투자 위험등급별로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취한 펀드 가입 시 수수료를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으로 나눈 비율
 - (가)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펀드 약관에 의거하여 수취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
 - (나) 투자 위험등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펀드 약 관에서 정한 등급을 따름
 - (다) 펀드 가입 시 수수료는 판매보수를 수취한 사업자의 비용률에 포 함하되, 해당 펀드의 일별 적립금 평균과 약관의 보수율을 기초로

계산. 이때 보수율은 해당년도말 약관을 기준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는 당해연도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펀드 가입 시 수수료에 포함

- (라) 재간접형 비용률은 피투자펀드의 비용률을 산술평균하되, 피투자펀드는 공시대상 연도말 기준 가장 최근의 공시를 기준으로 함(단, 피투자펀드를 포함한 재간접형의 비용률이 투자설명서 또는 결산서 등에 기재된 경우는 해당 비용률 적용 가능)
- (5)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 = ∑[매일 운용관리적립금] ÷ 연간일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균적립금 = ∑[매일 자산관리적립금] ÷ 연간일수, 펀드로 운용된 평균적립금 = ∑[매일 펀드 운용 적립금] ÷ 연간일수 (단, 운용관리기관 또는 자산관리기관 중 하나로만 등록한 경우 해당 적립금을 평균적립금으로 하며, 운용관리적립금은 퇴직연금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운용손익 연동 수수료가 부과되는 적립금을 포함)
- (6) 원리금 비보장상품 대상 수수료 감면정책: 가입자의 적립금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자산)관리수수료에 대 한 감면정책(원리금 보장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해연도 말 기준 운용(자산) 관리계약서(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수수료 감면대상 적립금의 범위, 할인율 등)

[별표 3]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공시자료 작성 방법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상품명	해당 상품명 입력
링크	해당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 등록
금리	제시된 기간별 금리 입력(공시금리 기준)
설명	상품 관련 특기사항 등 입력

[별표 4] 연금저축신탁 공시자료 작성방법

1.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작성	 구분	-1 .1 . n 6
대	소	작성 내용
보고서 작	성기준일	해당 기준연도 입력 (연도와 월을 6자리로 표시(YYYYMM) / 예 : 201909)
작성	근위	금액은 "원"단위로 숫자, 비율은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상품	코드	상품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코드
상품	-명	약관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기재
판매여	겨부	1= 판매, 2=중단
최초핀	매일	"-"등 구분자 없이 숫자만 입력(YYYYMMDD)
판매종	-료일	"-"등 구분자 없이 숫자만 입력(YYYYMMDD) 판매중인 경우 "99991231"입력
원금	보장	1=보장, 2=비보장 신탁, 보험은 원금보장이 되므로 "1", 펀드는 "2"
상품-	유형	안정형, 채권형, 주식형 등 해당상품 유형의 숫자를 입력 1:안정형, 2:채권형, 3:금리연동형, 4:금리확정형, 5:주식형, 6:혼 합주식형, 7:혼합채권형, 8:단기금융, 9:투자계약, 10:파생상품, 11:부동산, 12:실물, 13:재간접, 14:특별자산 15:혼합자산 16:기타
중도인출	가능여부	1=가능, 2=불가능
연금 수	령기간	1=확정기간형, 2=종신형, 3=연금수령시 선택형
수수료 (적립금		1=증가형, 2=감소형 (예 : 신탁,펀드는 "1", 보험은 "2")
계좌이체	가능여부	1=가능, 2=불가능. '계좌이체 제도'에 따라 타 권역 등에서 이체된 자금을 편입(수관)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 "1"
납입원금(설 작성기	정액) 잔액 준일	작성기준일(비교공시정보 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기말)의 상품별 납입원금 잔액
납입원금(설 작성기준일		과거 1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1년' = 2019년 -1년 = 2018년 다만, 작성기준일이 2019.12월말인 경우 과거 1년(=작성기준일 -1년)은 2019년이 됨)
납입원금(설 작성기준일		과거 2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2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2년' = 2019년 -2년 = 2017년)
납입원금(설 작성기준일		과거 3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3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3년' = 2019년 -3년 = 2016년)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작성기준일 (비교공시정보 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기말)의 상품별 적립금(평가금액) 잔액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연도-1년	과거 1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적립금(평가금액) 잔액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1년' = 2019년 -1년 = 2018년 다만, 작성기준일이 2019.12월말인 경우 과거 1년(=작성기준일 -1년)은 2019년이 됨)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연도-2년	과거 2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2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적립금(평가금액) 잔액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2년' = 2019년 -2년 = 2017년)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3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적립금(평가금액) 잔액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3년' = 2019년 -3년 = 2016년)
소급1년 수익률	작성기준월로부터 소급 1년이 되는 월까지의 기간의 수익률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예: 작성기준월이 2019.6월말인 경우 2019.6월~2018.7월까지의 기간임 다만, 작성기준월이 2019.12월말인 경우 소급 1년은 2019.12월~2019.1월의 기간이 됨)
소급1년 배당률*	작성기준월로부터 소급 1년이 되는 월까지의 기간의 배당률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배당률은 '-'표기 (ex : -13.56) (예: 작성기준월이 2019.6월말인 경우 2019.6월~2018.7월까지의 기간임 다만, 작성기준월이 2019.12월말인 경우 소급 1년은 2019.12월~2019.1월의 기간이 됨)
연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연 배당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배당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배당률은 '-'표기 (ex: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연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2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연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3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비교지수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해당상품과 투자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로 과거 1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비교지수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2년	해당상품과 투자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로 과거 2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비교지수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3년	해당상품과 투자 비교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익률로 과거 3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의 초일(1.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하고 있는 12개월 만기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연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수수료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2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수수료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3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의 1.1.~12.31.의 연간수수료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3년)의 연 평균 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 작성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별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5년	과거 5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5년)의 연 평균 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7년	과거 7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7년)의 연 평균 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10년	과거 10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10년)의 연 평균 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연평균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3년)의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작성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별 수수료을의 평균 수수료율
연평균 수수료율	과거 5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5년)의
•	

작성기준일 연도-1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작성기준일 연도-5년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평균 수수료율	과거 7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7년)의
작성기준일 연도-1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작성기준일 연도-7년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평균 수수료율	과거 10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10년)의
작성기준일 연도-1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작성기준일 연도-10년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배당률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연합회 및 공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음)

(1) 상품별 수익률 산출식

구 분	산정 방식
월 운용수익	(당월말 순자산가액 - 전월말 순자산가액) + 당월 해지액 - 당월 설정액 * 당월말이 결산일인 경우 : (당월말 순자산가액 + 이익분배금)을 당월 설정금액으로 사용 * 설정금액 : 결산일 재투자금액을 차감한 설정금액을 사용
월 수익률	월 운용수익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누계)
연 수익률	해당연도의 월 수익률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익률을 산정한 뒤 연 환산 = [{(1+r1)(1+r2)(1+r12)}^(1/12) - 1] x 12, r = 월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납입원금 대비 연 수익률을 일정기간(3, 5, 7, 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 = { (1+R1)(1+R2)(1+Rn) } ^ (1/n) - 1 R = 연 수익률

(2) 상품별 수수료율 산출식

구 분	산정 방식	
월 수수료 금액	[일별 순자산가액 X 일별 총 수수료율]의 월간 합 * 총 수수료율 = 신탁보수 비율 + 기타비용 비율	
월 수수료율	월 수수료 금액 / 당월말 납입원금 잔액(누계)	
연 수수료율	해당연도의 월 수수료율을 기하평균하여 월평균 수수료율을 산정한 뒤 연 환산 = [{(1+f1)(1+f2)(1+f12)}^(1/12) - 1] x 12, f = 월 수수료율	
연평균 수수료율	납입원금 대비 연 수수료율을 일정기간(3, 5, 7, 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 = { (1+F1)(1+F2)(1+Fn) } ^ (1/n) - 1 F = 연 수수료율	

(3) 상품별 배당률 산출식

구 분	산정 방식	
배당률	[(기말 기준가 - 기초 기준가)/기초기준가] × (365/운용일수) × 100	

2. 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

작성 구분		
대 소	작성 내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해당 기준연도 입력 (연도와 월을 6자리로 표시(YYYYMM) / 예 : 201909)	
작성단위	금액은 "원"단위로 숫자, 비율은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며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 기재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작성기준일	작성기준일(비교공시정보 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기말)의 회사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의 합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작성기준일 연도-1년	과거 1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 해당 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회사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의 합계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1년' = 2019년 -1년 = 2018년 다만, 작성기준일이 2019.12월말인 경우 과거 1년(=작성기준일 -1년)은 2019년이 됨)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작성기준일 연도-2년	과거 2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2년을 차감한 것) 해당 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회사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의 합계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2년' = 2019년 -2년 = 2017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3년을 차감한 것) 해당연 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회사별 납입원금(설정액) 잔액의 합계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3년' = 2019년 -3년 = 2016년)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작성기준일(비교공시정보 산정에 기준이 되는 분기말)의 회사별 적립금(평가금액) 잔액의 합계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연도-1년	과거 1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것) 해당 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회사별 적립금(평가금액) 잔액의 합계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1년' = 2019년 -1년 = 2018년 다만, 작성기준일이 2019.12월말인 경우 과거 1년(=작성기준일 -1년)은 2019년)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연도-2년	과거 2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2년을 차감한 것) 해당 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회사별 적립금(평가금액) 잔액의 합계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2년' = 2019년 -2년 = 2017년)	
적립금(평가금액)잔액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3년을 차감한 것) 해당 연도의 1.1.~12.31.의 연도 말의 회사별 적립금(평가금액)잔액의 합계 (예: 작성기준일이 2019.6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 연도 -1년' = 2019년 -3년 = 2016년)	
소급1년 수익률	작성기준월로부터 소급 1년이 되는 월까지의 기간의 수익률로 각 공시대상 상품별 소급1년 수익률을 납입원금 잔액 비중으로 기중평균하여 신출 (예: 작성기준월이 2019.6월말인 경우 2019.6월~2018.7월까지의 기간임)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예: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회사별 수익률과 비교대상이 되는 수익률로 금융감독원이 산정 금융회사는 공란으로 기재	
연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1.1~12.31)의 각 공시대상 상품의 연 수익률을 납입원금 잔액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예: 작성기준월이 2019.6월말인 경우 2019.6월~2018.7월까지의 기간임)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예: -13.56)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익률이 됨	

연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2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2년을 차감한 해당연도(1.1~12.31)의 각 공시대상 상품의 연 수익률을 납입원금 잔액비중으로 기중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예: -13.56)
연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3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3년을 차감한 해당연도(1.1~12.31)의 각 공시대상 상품의 연 수익률을 납입원금 잔액비중으로 기중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예: -13.56)
연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1년을 차감한 해당연도(1.1~12.31)의 각 공시대상 상품의 연 수수료율을 납입원금 잔액비중으로 기중평균하여 산출 (예: 작성기준월이 2019.6월말인 경우 2019.6월~2018.7월까지의 기간임)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100.00) · 작성기준일이 12월말인 경우 작성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수수료율이 됨
연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2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2년을 차감한 해당연도(1.1~12.31)의 각 공시대상 상품의 연 수수료율을 납입원금 잔액비중으로 기중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연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3년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서 3년을 차감한 해당연도(1.1~12.31)의 각 공시대상 상품의 연수수료율을 납입원금 잔액비중으로 기중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3년)의 회사별 연평균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 작성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별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5년	과거 5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5년)의 회사별 연평균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 -13.56)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7년	과거 7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7년)의 회사별 연평균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연평균 수익률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10년	과거 10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10년)의 회사별 연평균수익률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100.00) · 마이너스 수익률은 '-'표기 (ex: -13.56)
연평균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3년	과거 3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3년)의 회사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 작성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의 각 연도별 수수료율의 평균 수수료율
연평균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5년	과거 5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5년)의 회사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평균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7년	과거 7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7년)의 회사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연평균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연도-1년 ~작성기준일 연도-10년	과거 10년간(작성기준일 연도-1년~작성기준일 연도-10년)의 회사별 연 평균 수수료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세번째자리에서 반올림 (ex : 100.00)

(1) 회사별 수익률(납입원금 대비)

구 분	산정 방식	
소급1년 수익률	{ (A상품 소급1년 수익률 X A상품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 ÷ 회사 전체상품의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의 합 } + + { (Z상품 소급1년 수익률 X Z상품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 ÷ 회사 전체상품의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의 합 }	
연수익률	{ A상품 연 수익률 X A상품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 : 회사 전체상품의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의 합 } + … + { Z상품 연 수익률 X Z상품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 : 회사 전체상품의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의 합 }	
연평균 수익률	연 수익률(회사별)을 일정기간(3, 5, 7, 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	

(2) 회사별 수수료율

구 분	산정 방식	
연 수수료율	{ A상품 연 수수료율 X A상품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 : 회사 전체상품의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의 합 } + + { Z상품 연 수수료율 X Z상품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 : 회사 전체상품의 납입원금(작성기준일) 잔액의 합 }	
연평균 수수료율	연 수수료율(회사별)을 일정기간(3, 5, 7, 10년)별로 기하평균하여 산출	

[**별표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 정기 예·적금 공시자료 작성 방법 (2016.06.08. 신설)

은행명	해당 은행명 입력
상품명	해당 상품명 입력
링크	해당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 등록
금리	제시된 기간별 금리 입력(공시금리 기준)
설명	상품 관련 특기사항 등 입력

6. 외환수수료 및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 비교공시 작성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외환수수료 및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 비교공시(이하 "비교공시")" 자료를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이 통화별 매매스프레드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기관의 범위) 본 지침에 따라 비교공시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은 연합회의 정사원 중 개인을 대상으로 외환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공시담당자의 지정) ① 공시기관은 비교공시 자료를 작성하는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자료의 등록·갱신·삭제) ① 공시기관은 제2장에서 정하는 공시자료(이하 "공시자료")를 등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기관은 공시자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동 공시자료를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③ 공시기관은 공시자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하고, 새로운 공시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공시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시를 위해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 ⑤ 연합회는 제4항의 홈페이지를 각 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제5조(공시자료의 점검) ① 공시기관은 제4조에 따른 등록·갱신·삭제 사항이 없더라도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최소 1회 이상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서 '은행확인일'을 갱신한다.

② 연합회는 작성된 자료를 해당 공시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비교하여 점검하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외환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

제6조(공시자료 작성범위) 외환수수료 비교공시자료의 작성 범위는 개인에 대한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정한다.

- 1.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
- 2. 해외로부터 외화송금수수료
- 3. 국내외화이체수수료
- 4. 외화수표매입수수료
- 5. 외화수표추심수수료
- 6. 외화현찰수수료
- 7. 여행자수표판매수수료
- 8. 수출신용장통지수수료
- 9. 수출환어음매입취급수수료
- 10. 수출환어음추심수수료
- 11. 수입신용장개설수수료
- 12. 수입신용장기타조건변경수수료
- 13. 수입어음인수수수료
- 14. 수입화물선취보증서발급수수료

제3장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 비교공시 자료 작성

제7조(공시자료 작성범위) 비교공시자료의 작성 범위는 개인에 대한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통화로 한다.

- 1. 대상 : 외화현찰을 살때와 팔때의 스프레드
- 2. 통화 : 미달러(USD), 일본엔(JPY), 유럽유로(EURO), 영국파운드(GBP), 호주 달러(AUD), 뉴질랜드달러(NZD), 캐나다달러(CAD), 싱가폴달러(SGD), 홍콩달러(HKD), 스위스프랑(CHF), 중국위안(CNY), 베트남동(VND), 태국바트(THB)

제8조(세부작성요령) 세부작성요령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외국환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동 지침 내 항목의 수정 및 추가는 외국환전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12. 12. 20.)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외국환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동 지침 내 항목의 수정 및 추가는 외국환전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14. 04. 11.)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외국환전문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동 지침 내 항목의 수정 및 추가는 외국환전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별표 1] 외환 수수료 공시자료 작성방법

작성 구분 작성 내용			
1. 은행명	해당 은행명 등록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		
	해외로부터 외화송금수수료		
	국내외화이체수수료		
	외화수표매입수수료		
	외화수표추심수수료		
	외화현찰수수료		
2. 구분	여행자수표판매수수료		
2. 下亡	수출신용장통지수수료		
	수출환어음매입취급수수료		
	수출환어음추심수수료		
	수입신용장개설수수료		
	수입신용장기타조건변경수수료		
	수입어음인수수수료		
	수입화물선취보증서발급수수료		
3. 링크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외환수수료 안내 페이지로 직접		
J. 0 —	연결되도록 링크 주소 등록		
4. 기준일	수수료 변경일		
5. 내용	해당 수수료 산출근거 기재		
J. 410	최저 OOO원, 최고 OOO원		

7. 은행상품별 대출금리 공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은행이 각 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별 대출금리를 추가로 공시할 경우 통일된 작성기준을 제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상품 간 비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 따라 공시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은 연합회의 정사원 중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3조(상품기준) 이 지침에 따라 공시를 시행하여야 하는 상품은 현재 판매 중인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외부 기관과 협약에 따라 금리가 별도로 정해지는 대출상품은 제외한다.

제4조(공시자료 작성방법) ① 각 상품별 대출금리는 그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기준금리에 가산한 금리(이하 "가산금리"), 상품별로 적용하는 할인금리(이하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다만,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다수인 경우구분하여 공시한다.

- ② 공시기관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함께 공시한다.
 - 1. 금리 유형
 - 2. 신용등급
 - 3. 만기
 - 4. 담보종류
 - 5. 상환방식
- 6. 대출금액
- 7. 자금용도
- ③ 제2항 각 호의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원칙

- 으로 한다. 다만, 상품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 금리 유형은 상품 특성에 따라 고정·변동·혼합형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신용등급은 3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 3. 만기는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최대 만기가 30년 미만이 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만기로 한다.
- 4. 담보종류는 아파트 담보 및 아파트외 기타 담보를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상환방식은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6. 대출금액은 2억원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7. 자금용도는 주택구입자금용도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시기관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⑤ 공시기관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자료의 점검) 공시기관은 제4조에 따라 공시한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한다.

부 칙(2017. 4.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은행별로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관리) 이 지침 내 조항의 수정 및 추가는 여신전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9. 8.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상품통일공시 모범규준 이력관리표

번호	제·개정일자	관련키워드	숭인·의결위원회	현 관리부서
1	2011.02.14. 제정	예금금리·수수료, 대출금리·수수료, 신탁금리, 퇴직연금, 퇴 직연금용 정기예금, 외환수수료 등 비교공시	이사회 및 수신, 여신, 신탁, 외 국환전문위원회	수신제도부
2	2011.09.20. 개정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이사회,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3	2012.09.24. 개정	연금저축 비교공시	이사회 및 신탁전문위원회	자금시장부
4	2012.11.27.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신탁전문위원회	자금시장부
5	2012.12.12. 개정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6	2012.12.20. 개정	외환수수료 비교공시 작성지침 개정	외국환전문위원회(2012-13차)	여신제도부
7	2013.03.05. 개정	재형저축금리 비교공시	수신전문위원회	수신제도부
8	2013.03.19. 개정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9	2013.07.25. 개정	재형저축금리 비교공시	수신전문위원회	수신제도부
10	2013.08.19. 개정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11	2013.10.02. 개정	연체이자율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12	2014.01.21. 개정	연금저축 비교공시	신탁전문위원회	자금시장부
13	2014.02.26. 개정	연체이자율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14	2014.04.11. 개정	외화현찰매매스프레드 비교공시	외국환전문위원회(2014-5차)	여신제도부
15	2014.07.18. 개정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이율 비교공시	수신전문위원회	수신제도부
16	2015.09.10. 개정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17	2016.01.15. 개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재형저축	수신전문위원회	수신제도부

18	2016.01.08.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	신탁전문위원회	자금시장부
19	2016.06.08. 개정	ISA용 운용상품 비교공시 신설	신탁전문위원회	자금시장부
20	2016.10.17. 개정	중소기업대출금리 비교공시	여신전문위원회	여신제도부
21	2017.04.14. 개정	은행상품별 대출금리 공시지침 추가	여신전문위원회(2017-5차)	여신제도부
22	2017.07.13.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17-5차)	자금시장부
23	2019.08.14. 개정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및 은행상품별 대출 금리 공시지침 개정	여신전문위원회(2019-9차)	여신제도부
24	2019.12.31.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19-5차)	자금시장부
25	2019.12.31. 개정	연금저축신탁 비교공시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19-6차)	자금시장부
26	2020.01.22. 개정	예금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수신전문위원회(2020-3차)	수신제도부
27	2022.09.29.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22-3차)	자금시장부
28	2022.11.04.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22-4차)	자금시장부
29	2023.07.12. 개정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여신전문위원회(2023-9차)	여신금융부
30	2023.07.20. 개정	예금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수신전문위원회(2023-3차)	디지털혁신부
31	2023.10.05. 개정	연금저축신탁 비교공시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23-3차)	자금시장부
32	2023.11.10. 개정	예금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수신전문위원회(2023-5차)	디지털혁신부
33	2024.12.05. 개정	대출금리·수수료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여신전문위원회(2024-11차)	여신제도부
34	2025.04.04.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25-2차)	WM실
35	2025.06.17. 개정	퇴직연금 비교공시 개정	신탁전문위원회(2025-3차)	WM실